

오회중 위원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서

대전도시계획 (용도구역지정)현황

- 개발제한구역 -

도 시 계 획 과

◀개발제한구역 지정현황▶

- 1973. 6. 27 : 최초지정(건설부 고시)
- 1974. 5. 20 : 지적승인(건설부고시 제 129호)
 - 면 적 : 381.1 km²
 - 대상지역 : 대덕군(유성읍, 신탄진읍 기성면, 회덕면, 구직면, 탄동면, 산내면, 진잠면,)
공주군(반포면), 금산군(복수면),
연기군(금남면)
- 1991.5.11 : 개발제한구역조정(건설부고시 제244호)
 - 면 적 : 381.1 km² ⇒ 377,805 km²
 - 변경사유 : 감) 3,295 km²을 도시계획구역에서 제척
(계룡도시계획구역)

계룡도시계획구역 3,295 km²

건 설 부

도시 30312-13310 (500-2858) 1991. 5. 11

수신 대전직할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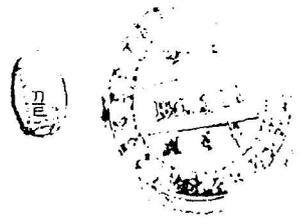
제목 대전 도시계획변경결정 및 계룡도시계획 결정

1. 도계 30310-10578 ('91. 4. 16)의 관련입니다.

2. 대전 도시계획을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 고시하였기 통보하니 결정도서 사본을 귀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하고, 지적고시 등 관련 도시계획 업무수행에 안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첨부 1. 고서문사본 1부.

2. 도시계획 변경결정 도면 1부.



도시계획국장
김영
12
건 설 부



63
No. 182f
부



건설부고시제. 244 호

대전 도시계획 및 계룡 도시계획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및 결정하였기 동법 제 12조 제 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하며, 도시계획 결정도서사본을 대전직할시청, 충청남도청, 논산군청 및 계룡 출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한다.

1991. 5.

건설부장관

= 다 음 =

가. 도시계획 결정조서 : 별첨

- 별첨 도면표식와 같음 (도면생략).

○ 도시계획결정(변경) 조서

가. 대전 도시계획 변경결정 조서

○ 도시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시명	구역	면적(k㎡)	비고
기정	대전	충남 대전시 전역 및 대덕군, 연기군, 공주군, 금산군 일부지역	556.72	
변경	-	대전직할시 전역 및 연기군, 공주군, 금산군, 일부지역	553.425	감) 3.295k㎡ 계룡 도시계획구역에 포함

○ 용도지역 변경결정 조서

구분	면적 (㎡)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556,720,000	감)3,295,000	553,425,000	100.0	
주거지역	52,433,675		52,433,675	9.5	
상업지역	5,846,499		5,846,499	1.1	
공업지역	9,567,960		9,567,960	1.7	
녹지지역	소계	488,871,866	감)3,295,000	485,576,866	87.7
	자연녹지	478,290,971	감)3,295,000	474,995,971	85.8
	생산녹지	10,580,895		10,580,895	1.9

○ 용도구역 변경결정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k㎡)	비고
기정	개발제한구역	대전시, 대덕군, 공주군, 금산군, 연기군, 논산군 일부	381.1	
변경	-	대전직할시, 공주군, 금산군, 연기군 일부	377.805	감) 3.295k㎡ 계룡 도시계획에 포함

충 청 남 도

1974, 5, 20

지역 415. 1327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개발제한구역 지적승인.

대전시 개발제한구역 지적고시가 건설부 로부터 별첨고시문 사본 및 관계도면과 같이 고시되었으니 시 및 군청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일 것이며 표석을 조속히 설치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철저를 기할것.

첨부 : 고시문 사본 및 관계도면 1부 = 끝 =

415.1327

1974.5.22

충 청 남 도

발도승지
No: 10111
충청남도

도시계획개발
수신처 : 마 3, 4, 5, 6

정부 공문서 규정 제 27 조 제 8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 인 설 구 라 성 명 기 중 한 전 건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미완결

건설부 고시 제129호

건설부 고시 제88호(73. 3. 5) 및 제258호 (73. 6. 27)로 결정한 춘천, 대전, 금남, 현도군북군시전주삼례, 마산. 진해진주. 문산. 충무. 및 제주 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지적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 고시한다. 본 제도서를 관계도청 및 시 군청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4, 5, 9.
건 설 부 장 관



1. 개발제한구역 지적승인 조서

도시명	구역	면적(㎡)	비고
춘천	춘천시행정구역 춘성군(신북면.신동면.동면.서면.남면, 사북면,북산면, 동산면)일부 홍천군(북방면)일부	294,4	
대전	대전시도시계획구역 대덕군(유성읍, 신탄진읍, 기성면, 회덕면, 구척면, 탄동면, 동면, 산내면, 진잠면) 공주군(반포면) 금산군(복수면)	381,1	
금남	연기군(금남면) 일부	3,4	
현도	청원군 현도면	26,9	
군북	옥천군 군북면	7,6	

중 략

별첨도면 표시와 같음.(도면생략)

도면은 관계도청 및 시, 군청에 보관. = 끝 =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즈음하여

도민 여러분에게 알리는 말씀

친애하는 도민 여러분!

정부는 지난 1973. 6. 27자로 (건설부 고시 제258호) 대전시, 대덕군, 공주군, 연기군, 금산군 일부 지역이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 발표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1. 개발제한 구역 면적 (384,564)

시 군 번	면	(동)	면
대전시 9,304	공군동, 가양동, 가양동, 관안동, 가오동, 안평동, 정림동, 신성동, 각 일부.		
대덕군 310,704	계성면, 괴성면, 구정면, 유성면, 북면, 단풍면, 봉면, 산내면, 전향면, 각 일부.		
공주군 19,504	박포면		
연기군 40,504	금남면		
금산군 10,504	복수면		

2. 개발제한 구역 내의 행위 제한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는 주택지나 농업용지, 학교용, 조성과 일반 건축물의 설치가나 증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오니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은 원리인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건축물에 대하여

- 가. 도시수용지 제3조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시설완공 그 운영관리용의 건축물, 보건소, 진료소, 경찰관, 파출소, 초소, 기본국민학교와 중앙교의 건축물. 그 용도로 보아 인주면적 지역안에 용이 부처당하고 개발제한 구역안에 용이 지당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건축, 파야용, 유류, 식원의 저장시설의 건축물의 건축물
- 나. 농민 수산물 창고와 육사 및 관리용의 건축물 (토지면적의 5/1,000 이하로서 30㎡ 이내)
- 다. 기존 주택으로서 10㎡ 미만의 층수와 용인규모 내의 계속, 제속 및 비주거용 건축물, 용인규모 내의 계속 또는 제속

4. 토지에 대하여

- 가. 많은 토석채취, 또는 임목 인채취 수반하지 아니 하거나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농경지조성, 원예, 목장, 자수인나 건물 부적으로 토석채취를 이용하여 근교농지로서 활용은 가능합니다.

5. 시행중의 공사에 대하여

가. 1973. 6. 27부터 1973. 7. 26까지 다음 관계 법령에 의거 합법적으로 허가받은 건축공사에 착수하고 있는공은 제 허가 신청기간 내에 허가사본을 갖추어 관계관에게 해당 시, 군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 입 면	허가 사항 (예시)	제 회 가 신청기간	발 입 면	허가 사항 (예시)	제 회 가 신청기간	발 입 면	허가 사항 (예시)	제 회 가 신청기간
건축면	건축 허가	1973. 7. 26	하천면	하천공작물 설치허가	1973. 7. 26	산림면	산림 허가	1973. 7. 26
도시계획면	도시계획 변경허가	○	도로면	도로개설 및 전용	○	임야면	임야 전용에 관한 법률	○
도시계획면	도시계획 변경허가	○	농림면	농림면 변경허가	○	농림면	농림면 변경허가	○
산림면	산림 허가	○	농림면	농림면 변경허가	○	농림면	농림면 변경허가	○
토지면	토지 조성	○	사방면	사방사업	○			

6. 기타 상세한 것은

- 가. 관계법령 및 도민은 중남도청 계획과 (9055) 대전시 도시과 (9268) 대덕군 건설과 (9684) 공주군 건설과 (504) 연기군 건설과 (2171) 금산군 건설과 (322)에 비치하고 관계문서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발제한 구역이 지정되어 토지의 이용이 부분적으로나마 제한되므로 약간의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300만 도민의 산업발전과 국민생활의 필요를 위하여 위한 조치 이오니 소기의 성과가 이룩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는 바라미지 합니다.

1973년 6월 일

충청남도지사 민유동

第 3 章 都 市

第 1 節 都市計劃

●都市計劃法 **〔1971. 1. 19〕**
法律第2291號

개정 1972. 12. 30 법률제2435호

1976. 12. 31 法律第2988號

1979. 4. 17 法律第3165號(駐車場法)

1981. 3. 31 法律第3410號

1982. 12. 31 法律第3642號(國土利用管理法)

1984. 12. 15 法律第3755號(行政審判法)

1989. 12. 30 法律第4175號(開發利益還收에 관한法律)

1989. 12. 30 法律第4183號(政府組織法)

1991. 12. 14 法律第4427號

第 1 章 總 則

第 1 條 (目的) 이 法은 都市의 建設, 整備, 改良等을 위한 都市計劃의 立案·決定·
執行節次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을 規定함으로써 都市의 健全한 發展을 도모하
고 公共의 安寧秩序와 公共福利의 增進에 寄與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2 條 (定義) ①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72. 12.
30, 76. 12. 31, 91. 12. 14>

1. “都市計劃” 이라 함은 都市計劃區域안에서 都市의 健全한 發展을 도모하고 公
共의 安寧·秩序와 公共福利의 增進을 위한 土地利用·交通·衛生·環境·産
業·保安·國防·厚生 및 文化등에 관한 다음의 計劃을 말한다.

가. 都市計劃區域 및 第2章第2節(第17條 내지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地域·
地區·區域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計劃

나. 道路·廣場·駐車場·自動車停留場·鐵道·軌道·索道·河川·運河·港灣·
空港·綠地·公園·運動場·遊園地·觀望塔·公共空地·公用의 廳舍·學校·
圖書館·市場·水道·下水道·共同構·屠殺場·共同基地·火葬場·廢棄物處理
施設·水質汚染防止施設·電氣供給設備·貯水池·防風設備·가스供給設備·油
類貯藏 및 送油設備·流通業務設備·防水設備·防火設備·砂防設備·防潮設
備·熱供給設備 基地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施設의 設置·整備·改良에 관한
計劃

規定에 의한 地方都市計劃委員會, 市都市計劃委員會 또는 區都市計劃委員會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

[全文改正 91. 12. 14]

第 2 章 都市計劃

第 1 節 都市計劃의 立案 및 決定

第10條의2 (都市基本計劃의 樹立) ①서울特別市·直轄市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都市計劃區域을 管轄하는 市長 또는 郡守는 20年을 單位로 하여 長期都市開發의 方向 및 都市計劃立案의 指針이 되는 都市基本計劃을 樹立하여 建設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承認을 얻은 都市基本計劃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建設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都市基本計劃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地方議會의 의견을 듣고 (市長 또는 郡守가 미리 해당 地方議會의 의견을 들어 申請한 경우를 제외한다)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후 第68條의 規定에 의한 中央都市計劃委員會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 <改正 91. 12. 14>

③建設部長官은 第1項에 의하여 都市基本計劃을 承認한 때에는 이를 市長 또는 郡守에게 送付하고, 市長 또는 郡守는 지체없이 이를 公告하고 一般에게 供覽시켜야 한다.

④市長 또는 郡守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部長官의 승인을 얻은 都市基本計劃에 대하여 5年마다 그 妥當性與否를 檢討하여 都市基本計劃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改正 91. 12. 14>

⑤都市基本計劃의 樹立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81. 3. 31]

第11條 (都市計劃의 立案) ①市長 또는 郡守는 그 管轄 都市計劃區域안에서 施行할 都市計劃을 第10條의 2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都市基本計劃의 內容에 적합하도록 立案하여야 한다. 다만, 建設部長官은 國家計劃과 관련된 경우에는 職權 또는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의 요청에 의하여 管轄 市長 또는 郡守의 의견을 들은 후 스스로 立案할 수 있다. <改正 91. 12. 14>

② 市와 郡 또는 2以上の 市나 郡의 行政區域에 걸치는 都市計劃을 立案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市長 또는 郡守의 協議에 의하여 共同으로 立案하거나 그 立案할

者を 정한다.

③建設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구분에 의하여 立案할 者を 지정하고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다만, 第2號의 경우에는 지정전에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1. 12. 14>

1. 對象區域이 같은 道(서울 特別市 및 直轄市를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의 行政區域안에 있는 경우 : 관할 市・道知事
2. 對象區域이 2이상의 道の 行政區域에 걸치는 경우 : 建設部長官

第12條 (都市計劃의 決定) ①都市計劃은 建設部長官이 職權 또는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都市計劃立案者의 申請에 의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 地方議會의 의견을 듣고 (申請人이 미리 해당 地方議會의 의견을 들어 申請한 경우를 제외한다) 中央都市計劃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이를 決定한다. 決定된 都市計劃을 變更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輕微한 事項의 變更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1. 12. 14>

②建設部長官은 國防上 機密(國防部長官의 要求가 있는것에 限한다)을 要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都市計劃의 全部 또는 一部에 관한 決定에 있어 그 部分에 대하여는 관계 地方議會의 의견과 中央都市計劃委員會의 議決節次를 省略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에 필요한 都市計劃에 관한 중요한 基準 및 都市計劃施設基準에 관하여는 建設部令으로 정한다.

④건설부장관은 제 1항의 規定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고 결정된 도시계획도면을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개정 72. 12. 30>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都市計劃의 決定을 申請하는 경우에는 建設部令이 정하는 書類와 圖面을 첨부하여야 한다. <新設 91. 12. 14>

第13條(都市計劃에 관한 地籍등의 告示) ①市長 또는 郡守는 第12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都市計劃의 決定告示가 있을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都市計劃區域안의 土地에 관하여 地籍이 表示된 地形圖上에 都市計劃事項을 明示하여 建設部長官에게 그 承認을 申請하여야 한다.

②建設部長官은 第1項의 申請을 받은 때에는 그 地形圖를 決定된 都市計劃과

對照하여 錯誤가 없다고 認定할 때에는 當該 圖面을 承認한다.

③建設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의견을 들어 직접 第1項의 圖面을 作成할 수 있다.

④제12조제4항의 規定은 建設부장관이 제2항의 승인을 한 때 또는 제3항의 規定에 의하여 도면을 작성한 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72. 12. 30>

⑤삭제 <72. 12. 30>

第14條 (都市計劃의 失效) ①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承認申請을 第12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都市計劃의 決定告示가 있는 날로부터 2年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기간내에 前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建設部長官의 圖面作成도 없을 때에는 그 2年이 되는 날의 다음 날로써 그 都市計劃의 決定은 效力을 喪失한다.

②建設部長官은 第1項의 事由가 있을 때에는 그 事實을 告示하여야 한다.

第14條의2 (年次別 執行計劃의 樹立) ①市長 또는 郡守는 第12條第1項第1號 나 目 및 다目에 관한 都市計劃중 道路·廣場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事項에 관한 都市計劃에 대하여는 第12條第4項에 의한 都市計劃의 決定告示가 있는 날로부터 2年이내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年次別執行計劃(이하 “執行計劃”이라 한다)을 樹立하여야 한다. 第11條第1項 但書에 의하여 建設部長官이 都市計劃을 立案한 경우에는 建設部長官이 그 執行計劃을 樹立하여야 해당 市長 또는 郡守에게 送付할 수 있다.

②第1項에 의하여 執行計劃을 樹立하여야 할 都市計劃의 規模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市長 또는 郡守는 第1項에 의하여 執行計劃을 樹立하였거나 建設部長官으로부터 執行計劃을 送付받은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公告된 執行計劃을 變更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輕微한 事項의 變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市長 또는 郡守는 第3項에 의하여 執行計劃을 公告한 경우 그 執行計劃이 公告된 土地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假設建築物의 建築을 許可할 수 있다. 이 경우 市長 또는 郡守는 당해 土地에 대한 都市計劃事業이 施行될 때에는 그 施行豫定日 3月전까지 無償으로 假設建築物의 撤去등 原狀回復을 命하여야 한다. 다만, 原狀回復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5. 내지 8. 削除 <91. 12. 14>

9. 保存地區 : 文化財 및 중요 施設物의 保護와 保存을 위하여 필요한 때

10. 削除 <91. 12. 14>

11. 駐車場整備地區 : 駐車場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된 地區

12. 공항지구 : 공항시설의 보호와 航空機의 安全運航을 위하여 필요한 때

13. 施設保護地區 : 學校施設의 보호와 港灣 및 業務機能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
요한 때

②건설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제1항의 지구를 다시 세분하거나 그 지구 이외의 지구의 지정을 도시계획으
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72. 12. 30>

第19條 (地域·地區 및 區域안의 行爲制限 등) ①第2章第2節(第17條 내지 第22條)
의 規定에 依하여 指定된 地域·地區 및 區域안에 있어서의 建築 기타의 行爲
의 制限 및 禁止에 關하여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建築法 및 기타의 法律이 定하는 바에 依한다. <改正 91. 12. 14>

②削除 <91. 12. 14>

③保存地區안에서의 建築物 기타 施設의 建築 또는 設置에 關한 制限은 다음 各
號에 依한다. <改正 89. 12. 30 法4183>

1. 文化財의 保存을 爲하여 指定된 保存地區안에서는 文化財保護法의 適用을 받
는 文化財를 직접 管理·保護하기 爲한 建築物 기타의 施設 이외에는 이를
建築 또는 設置할 수 없다. 다만, 市長 또는 郡守가 該 文化財의 保存上 支障
이 없다고 認定하여 文化部長官의 承認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國防上 重要な 施設物의 保存管理를 爲하여 指定된 保存地區안에서는 該 指
定目的에 違背되는 建築物을 建築하거나 施設을 設置할 수 없다. 다만, 市長
또는 郡守가 該 施設物의 保存管理에 支障이 없다고 認定하여 國防部長官의
承認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 (특정시설제한구역의 지정) ①건설부장관은 도시에 있어서의 산업과 인구의
과대한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공장, 학교, 중앙도매시장 등의 특정시설의 전부 또는 일
부의 설치가 제한될 구역(이하 "특정시설제한구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도시계
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本條新設 91. 12. 14]

第21條 (開發制限區域의 指定) ①建設部長官은 都市의 無秩序한 擴散을 防止하고 都市周邊의 自然環境을 保全하여 都市民의 健全한 生活環境을 確保하기 위하여 또는 國防部長官의 要請이 있어 保安上 都市의 開發을 制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都市開發을 制限할 區域(이하 “開發制限區域”이라 한다)의 指定을 都市計劃으로 決定할 수 있다. <개정 72. 12. 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서는 그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면적의 분할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이미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하여 허가를 받아(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개정 72. 12. 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될 행위의 범위 기타 개발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안에서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72. 12. 30>

第22條 (都市開發豫定區域의 指定) ①建設部長官은 도시에 있어서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그 適正 配置를 함으로써 都市의 均衡있는 發展을 圖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도시의 인근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基準이상의 面積과 要件을 갖춘 一定한 地域을 都市開發豫定區域(이하 “開發豫定區域”이라 한다)으로 指定할 수 있다. <개정 72. 12. 30>

②第1項의 指定에 있어서 建設部長官은 內務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하며, 그 指定은 都市計劃으로 決定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開發豫定區域이 指定된 때에는 建設部長官은 3年이내에 그 區域안에서 實施할 都市計劃을 決定하여야 한다.

④第3項의 期間내에 開發豫定區域안에서 實施할 都市計劃이 決定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期間의 滿了로써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定은 그 效力을 喪失한다.

⑤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이 결정될 때까지 개발예정구역안에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72. 12. 30>

第 3 章 都市計劃事業의 施行

4. 削除 <81. 3. 31>

②再開發事業 및 都市計劃事業으로 施行하는 各種 造成事業으로 인하여 造成된 垜地 및 建築施設中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所有에 속하는 財産의 處分에 관하여는 國有財産法 및 地方財政法등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許可·認可·決定등 處分이 있을 때에는 山林法の 規定에 의한 許可·認可·決定·承認·協議·解除 등 處分이 있는 것으로 본다.

<新設 81. 3. 31, 91. 12. 14>

1. 第4條第1項, 第20條의 2 第4項, 第21條第2項의 許可
2. 第12條第1項의 決定
3. 第25條第1項 또는 第57條第1項의 認可
4. 第2條第1項第1號 多目的 土地區劃整備事業 또는 再開發事業의 施行地區 또는 區域의 指定

④第80條의 規定에 의하여 都市計劃法이 準用된 都市計劃施設에 대하여는 國土利用管理法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立地承認 및 協議가 있는 것으로 본다

<新設 91. 12. 14>

第88條 (行政審判) 이 法에 의한 都市計劃事業施行者의 處分에 대하여는 行政審判法에 의하여 行政審判을 提起할 수 있다. 다만, 行政廳이 아닌 施行者의 處分에 대하여는 관할 市·道知事에게 行政審判을 提起하여야 한다. <改正84. 12. 15, 91. 12. 14>

第89條(施行令)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 7 章 罰 則

제9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千萬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改正81. 3. 31, 91. 12. 14>

1.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시설 제한구역안에서 설치가 제한된 특정시설을 설치한 자
2. 第20條의 2第4項 또는 第21條第2項에 違反하여 建築物의 建築, 工作物의 設置 또는 土地의 形質을 變更한 者

[전문개정 72. 12. 30]

● 도시계획법시행령 (1971. 7. 22)
대통령령제5721호전문개정

- 개정 1971. 10. 7 대통령령제 5806호
- 1973. 3. 21 대통령령제 6583호
- 1973. 7. 18 대통령령제 6775호
- 1976. 1. 28 대통령령제 7963호
- 1977. 10. 20 대통령령제 8732호
- 1979. 7. 13 대통령령제 9536호(주차장법시행령)
- 1981. 9. 25 대통령령제10473호
- 1982. 8. 7 대통령령제10882호(건축법시행령)
- 1982. 10. 23 대통령령제10937호
- 1985. 2. 27 대통령령제11646호(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 1988. 2. 16 대통령령제12397호
- 1988. 9. 24 대통령령제12522호
- 1989. 8. 18 대통령령제12781호(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 1989. 9. 5 대통령령제12799호(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 1990. 3. 2 대통령령제12936호(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 1990. 7. 6 대통령령제13044호(도시개발법시행령)
- 1990. 12. 18 대통령령제13184호(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 1991. 4. 18 대통령령제13353호(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 1991. 5. 11 대통령령제13368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타의 도시계획시설) 법 제2조제1항제1호 나목의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계기한 것을 말한다. <개정 81. 9. 23, 82. 10. 23, 88. 2. 16, 91. 5. 11>

- 1. 연구시설
- 2. 문화시설
- 3. 종합의료시설
- 4. 사회복지시설
- 5. 통신시설
- 6. 자동차 및 중기검사시설
- 7. 유수지시설
- 8. 공공직업훈련시설

제3조(도시계획시설의 세분) ①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조제1항제1호 나목의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한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세분할 수 있다.

<개정 73·3·21, 76·1·28, 82·10·23, 88·2·16, 91·5·11>

- 1. 도로
 - 가. 일반도로
 - 나. 자동차전용도로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 경우로서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공사의 완료후 3월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81. 9. 25]

제20조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①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는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건설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81. 9. 25>

1.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가.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

나. 그 용도로 보아 인구밀집지역안에 둘이 부적당하고 개발제한구역안에 둘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

다. 농림수산업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정이 없는 사업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건축

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당시 이미 있던 주택용 건축물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마. 비주택용 건축물과 공작물의 개축 또는 재축

2.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다량의 토석채취·임목의 벌채를 수반하지 아니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3. 토지의 분할로서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등의 행위가 수반되지 아니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②제1항에 의한 건축물 및 공작물의 종류·규모와 건축물의 최소 대지면적,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 건축면적의 토지형질변경면적에 대한 비율 및 토지분할의 기준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81. 9. 25>

[전문개정 76. 1. 28]

제21조(시행중인 공사에 대한 특례) ①법 제2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또는 사업(기 준공된 대지위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포함한다)을 계속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설계내용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1월이내에 관할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 그의 조정을 받아야 한다.

● 도시계획법시행규칙 [1976.4.3]
[건설부령제169호전문개정]

- 개정 1977. 4. 25 건설부령제186호
- 1977. 8. 8 건설부령제191호
- 1977. 11. 7 건설부령제195호
- 1978. 2. 3 건설부령제197호
- 1978. 2. 18 건설부령제198호
- 1978. 4. 4 건설부령제199호
- 1978. 4. 24 건설부령제200호
- 1978. 5. 25 건설부령제204호
- 1978. 7. 10 건설부령제208호
- 1978. 9. 7 건설부령제211호
- 1978. 11. 11 건설부령제214호
- 1979. 3. 26 건설부령제219호
- 1979. 5. 17 건설부령제223호
- 1979. 7. 4 건설부령제230호
- 1979. 12. 8 건설부령제256호
- 1980. 3. 5 건설부령제262호
- 1980. 5. 29 건설부령제264호
- 1980. 8. 18 건설부령제272호
- 1981. 2. 21 건설부령제290호
- 1981. 8. 31 건설부령제304호
- 1982. 4. 17 건설부령제326호
- 1982. 12. 3 건설부령제345호
- 1983. 1. 24 건설부령제352호
- 1983. 7. 6 건설부령제360호
- 1983. 9. 22 건설부령제363호
- 1984. 4. 27 건설부령제369호
- 1984. 6. 30 건설부령제371호
- 1985. 5. 1 건설부령제385호
- 1986. 4. 16 건설부령제400호
- 1986. 9. 4 건설부령제407호
- 1986. 10. 30 건설부령제411호
- 1987. 2. 28 건설부령제416호
- 1987. 11. 16 건설부령제427호
- 1988. 3. 10 건설부령제433호
- 1989. 2. 3 건설부령제445호
- 1990. 10. 31 건설부령제471호
- 1991. 1. 19 건설부령제475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계획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령”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82. 12. 3]

제2조(증표 및 허가증) 법 제 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 및 허가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82. 12. 3]

제3조(보고)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건설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한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영 제 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5일 이내에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토지면적의 1천분의 5이하로서 기존관리용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33제곱미터 이하

[본조신설 89·2·3]

제7조 (건축물, 공작물의 종류 및 규모등) ①영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및 공작물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주택을 관통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부지(개발제한구역지정 당시부터 당해 주택의 대지의 용에 공하고 있는 부지에 한한다)에서는 인접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규모와 동일한 규모로 한다. <개정 77·8·8, 77·11·7, 78·2·3, 78·5·25, 78·7·10, 78·9·7, 78·11·11, 79·3·26, 79·5·17, 79·7·4, 79·12·8, 80·3·5, 80·5·29, 80·8·18, 81·2·21, 81·8·31, 82·4·17, 82·12·3, 83·1·24, 83·7·6, 83·9·22, 84·6·30, 85·5·1, 86·9·4, 86·10·30, 87·2·28, 87·11·16, 88·3·10, 89·2·3, 90·10·31, 91·1·19>

1.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건축 또는 설치하는 다음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가. 축사 : 1가구(개발제한구역안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당 기존축사의 면적을 포함하여 300제곱미터이하(나환자촌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이하). 다만, 과수원·초지 등의 관리자 인근에는 100제곱미터이하의 축사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나. 초지조성과 사료작물재배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우마사 : 초지조성면적과 사료재배면적의 1천분의 5이하

다. 삭제<78·5·25>

라. 퇴비사 : 1가구당 기존퇴비사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이하

마. 잠실 : 뽕나무밭 조성면적 2천제곱미터당 또는 뽕나무 1천 800주당 50제곱미터 이하

바. 싸이로 : 우마등의 사육(낙농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최소한도

사. 창고 : 개발제한구역안의 토지 또는 그 토지와 일체가 되는 토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을 저장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기존창고면적을 포함하여 그 토지면적의 1천분의 5이하. 다만, 감귤을 저장하기 위한 경우에는 1천분의 10이하로 한다.

야. 관리용 건축물 : 과수원·초지·유실수단지·원예단지안에 설치하되, 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토지면적의 1천분의 5이하로서 기존관리용 건축물의 면적

을 포함하여 33제곱미터이하. 다만, 제주도에 있는 감귤농원의 경우에는 66제곱
미터이하로 한다.

자. 담배건조실 : 기존 잎담배건조실의 면적을 포함하여 잎담배재배면적의 1천분
의 5이하

차. 버섯재배사 : 1가구당 기존버섯재배사의 면적을 포함하여 300제곱미터이하

카. 양어장 및 그 부대시설 : 양어장의 부대시설중 관리용 건축물은 기존관리용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이하

타. 임시가설건축물 : 1가구당 농림수산업을 위한 기자재의 보관이나 농림수산물
의 단순가공 또는 건조 처리를 위한 임시가설건축물로서 그 면적이 100제곱
미터이하

파. 종묘배양장 : 해태, 미역등의 종묘생산을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서 1가구
(양식면허를 소지한 가구원이 있는 가구에 한한다)당 기존 종묘배양장의 면
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이하

2. 주택 및 부속건축물

가. 주택의 증축 : 지상층은 기존 지상층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이하
로 하고, 지하층은 기존 지하층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이하. 다
만, 개발제한구역지정이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자의 주택으로서 지하
층이 없는 경우의 지상층은 기존 지상층의 면적을 포함하여 117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나. 부속건축물의 건축 : 주택 또는 이에 준하는 건축물의 부속건축물에 한하되,
기존부속건축물의 면적(가목의 지하층의 면적을 포함한다)을 포함하여 33제
곱미터이하

3. 공익시설 : 공공용시설 및 공용시설등

가. 토지수용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공익사업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관리용 건축물

나. 문화재의 복원과 문화재관리용 건축물

다. 보건소, 경찰관파출소, 우체국(별정우체국을 포함한다). 초소, 읍·면·동사무
소(신축은 행정구역개편의 경우에 한한다), 보건진료소 및 예비군 운영에 필
요한 건축물

라. 학교(교육법 제81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시설

의 증축(개발제한구역안 또는 개발제한구역의 인접지에 이미 설치된 학교로서 그 개발제한구역의 인접지에 증축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과 국민학교의 분교장의 설치(댐 또는 고속도로등의 설치나 학구개편으로 통학이 곤란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직할시·시·읍의 지역과 면사무소 소재지 지역에서 문교부장관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학교·중학교의 신축 및 국민학교분교장의 설치를 할 수 있다.

마. 교정시설의 이축·증축과 구치소의 신축

바.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사격연맹이 태능선수촌 또는 태능사격장안에서 설치하는 선수훈련용 시설

사.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1) 공익사업, 부락공동사업 및 취락구조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어 인근대지 또는 인근부락(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생활연고지를, 생활연고지를 상실한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다른 읍·면·동의 구역을 포함한다)안으로 이축되는 건축물 및 공작물

(2) 빈발하는 수해로 그 이전이 불가피한 건축물, 외딴집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을 할 수 없는 건축물로서 인근대지 또는 인근부락안으로 이축되는 건축물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취락구조개선사업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인근에 있는 취락으로서 개발제한구역안으로 이축되는 경우 또는 개발제한구역안에 있는 취락으로서 당해 개발제한구역안 또는 다른 개발제한구역안으로 이전되는 경우의 당해 취락. 다만, 이전대상인 취락이 대지로서 부적당한 곳에 위치하거나 입지여건상 그의 이전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한다.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당시의 기존농촌지도소를 농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기존시설의 규모안에서의 건축물

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등산로·산책로·어린이놀이터·체력단련시설(철봉·평행봉·배구장·정구장등)·공중변소 및 33제곱미터이하의 간이휴게소

자. 공원묘지(기존 공설묘지를 포함한다)안에 그 운영에 필요한 대기실, 휴게소, 사무소, 장제소, 납골당(공설 화장장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을 포함한다)

조성

차. 태능선수촌 인접지역에 문교부가 설치하는 한국체육대학의 교육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카.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업협동조합 초급대학 구내에 설치한 교육시설의 증축

타. 서울특별시가 청계산 일대에 설치하는 남서울대공원 시설 및 부대시설

파. 제주도가 시행하는 기존 공설운동장의 시설확장 및 부대시설

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녹지조성사업과 병행하여 설치하는 탑 또는 기념비(전적기념비, 충화탑 등)

거. 서울특별시가 강남구 내곡동에 설치하는 시립아동병원시설 및 그 부대시설

너. 총무처가 과천지구 정부청사단지내에 수용하는 제2정부청사·공공기관의 청사 및 그 부대시설

더. 서울특별시의 통일로변 정비계획에 따라 도로연변에 건립하는 2층이하의 건축물의 건축. 다만, 기존건축물을 포함하여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하이고 바닥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것에 한한다.

러. 한국보훈복지공단이 설치하는 한국보훈복지공단보훈병원시설 및 그 부대시설

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종합사격장시설 및 그 부대시설

버. 행정구역(경찰서 등의 경우에는 관할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개편에 따라 필요하게 된 시청·구청·군청·경찰서 등 시·군·구 단위 공공청사(행정구역면적의 3분의 2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이고 그 구역외에는 적정한 입지 없는 경우에 한한다) 및 농업협동조합 사무실과 그 부대시설

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화장장 및 그 부대시설

어. 강원대학교에서 설치하는 실습농장 및 그 부대시설

저. 한국항공대학의 증축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치. 철도청이 건설하는 서울남부철도화물기지 및 그 부대시설

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종축장·잠종장·임업시험장·임목육종연구소 및 그 부대시설

티.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연구 및 방송시설의 증축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 피. 전라남도교육위원회가 전라남도 담양군에 신설하는 충의교육원 및 그 부대 시설의 설치
- 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공원시설(대중음식점 및 유드호스텔은 제외한다)
- 고. '86아시아경기대회 및 '88올림픽대회를 위하여 한국마사회가 경기도 시흥군 과천면 주암리 일원에 설치하는 승마경기장시설 및 그 부대시설
- 노. '86아시아경기대회 및 '88올림픽대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한체육회가 경상남도 진해시 자은동 산 1번지의 1호 일대에 설치하는 국가대표급 선수(우수 선수를 포함한다)의 전지훈련장 및 그 부대시설
- 도. 북한산 국립공원안에 설치하는 공원시설(공중목욕장·호텔 및 콘도미니엄 시설을 제외한다)
- 로. '86아시아경기대회 및 '88올림픽대회를 위하여 경기도가 광주군 동부읍 미사리에 설치하는 조정경기장시설 및 그 부대시설
- 모. 체육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입지를 선정한 것으로서 그 설치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는 연습용 잔디축구장시설 및 그 부대시설
- 보. 한국마사회가 경기도 고양군 원당면 원당리 소재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가축개량사업소의 부지안에 설치하는 종마의 보급·사육을 위한 시설 및 그 부대시설
- 소. 경상남도 양산군 기장읍 시량리 일원에 설치하는 국립수산물진흥원의 청사·시험연구시설·국립수산물기술훈련소의 청사·교육훈련시설 및 한국어업기술훈련소의 사무실·교육훈련시설과 그 부대시설
- 오. 한국에너지연구소가 충청남도 대전시 중구 덕진동 대덕연구단지안에 증축하는 시험연구시설 및 그 부대시설
- 조. 한국핵연료주식회사가 충청남도 대전시 중구 덕진동 대덕연구단지안에 설치하는 핵연료주기시설, 원자력폐기물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 초. 한국전력공사가 경상남도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에 설치하는 원자력 연수원 시설 및 그 부대시설
- 코. '86아시아경기대회 및 '88올림픽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서울아시아경기대회·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가 서울아시아경기대회·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 제7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

치하는 광고물 시설

- 토.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가 서울특별시 강동구 오금동 및 방이동 서울올림픽 선수촌·기자촌지역에 설치하는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각 1개학교 및 그 부대시설
- 포. 환경청이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에 설치하는 국립환경연구원부설 팔당임호연구소 및 그 부대시설
- 호. 강원도가 강원도 춘성군 동면 만천리에 설치하는 종합교육원(공무원교육원·농민교육원·운수종사자연수원) 및 그 부대시설
- 구.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이 경상남도 창원시 대방동에 설치하는 한국직업훈련 대학의 교육시설 및 그 부대시설
- 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휴식시설(잔디광장·피크닉장·청소년 수련시설등)과 그 부대·보조시설(간이시설에 한한다)
- 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부터의 내대지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외의 체력단련시설(철봉·평행봉·배구장·정구장등 건축물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시설에 한한다)
- 루. 서울특별시 남산제모습찾기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이전하는 국가기관의 청사 및 그 부대시설

4. 부락공동시설

- 가. 부락공동사업으로 축조하는 농로·제방·사방시설등
- 나. 새마을회관, 경로당
- 다. 공동작업장·공동창고 및 공동목욕탕
- 라. 기존정미소(개인소유도 포함한다)의 증축
- 마.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이 설치하는 공동구판장·하치장·창고·농기계수리소·농기계용유류판매소·선착장 및 물양장
- 바. 상여보관소
- 사. 제7조제1항제3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 취락구조개선사업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공동창고·마을회관·공동작업장·집하장·어린이놀이터·새마을유아원 및 소공원등 부락공동 이용시설
- 아. 양수시설 보호를 위하여 설치하는 17제곱미터이하의 간이급수용 양수장
- 자. 해태·미역등의 종묘생산을 위한 100제곱미터이하의 종묘배양장(기존 중

묘배양장의 면적을 포함한다)

차. 정자등 간이휴게소

5. 광공업시설등

가.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에 설치(법 제21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또는 사업이 계속 시행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공장, 수출품의 생산 및 가공공장 기타 수출진흥과 경제발전에 현저히 기여할 수 있는 공장의 증축(증축면적은 기존시설 연면적의 2분의 1이하로 하되, 증축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은 증축할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과 부대시설의 설치

나.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법 제21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또는 사업이 계속 시행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종업원 50인 이상 규모의 공장의 부대시설의 설치(새로운 대지조성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기존공장 부지안에서의 건축이어야 한다)

다. 제8조 제5호 내지 제7호에 필요한 건축물 및 공작물

라. 화약류 및 유류의 저장시설(송유관을 포함한다)과 그 관리용 건축물

마. 환경오염 방지시설

바. 기존주유소의 주유기보호시설의 설치와 무연유류저장을 위한 저장시설의 증설(기존저장시설 연면적의 2분의 1이내에 한한다)및 무연유류의 급유시설의 설치

사. 당해 도시의 연탄수급계획에 따른 연탄공장 저탄시설의 증설(기존부지면적의 2분의 1이내에 한한다)과 이에 따른 공장의 증축(기존공장면적의 2분의 1이내에 한한다) 및 부대시설의 설치

아. 기존도축장의 증축(기존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이내에 한한다)

6. 기타 건축

가. 기존 건축물의 동일용도 및 동일 규모 안에서의 개축·재축 및 대수선

나. 제7조제1항 제3호 및 제5호 다목 및 라목의 사업에 필요한 공사용 임시가설 건축물과 그 공사에 소요되는 블록·시멘트·벽돌·쇄석·레미콘 및 아스콘 등을 생산하는 임시시설

다. 다음의 건축물의 용도변경

- (1) 공장을 다른 업종의 공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이 경우 변경후의 업종은 공해의 정도가 종전의 업종보다 현저히 낮은 업종이거나 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오염물질등의 배출 기타 공해의 정도가 변경전의 업종의 정도를 넘지 아
니하여야 한다.

- (2) 공장·주택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일용품소매점·간이
음식점·대중음식점·다과점·다방·이용원·미용원·세탁소·공중목욕
탕·사진관·목공소·의원·조산소·동물병원·간이수리점·취사용가스
판매점·장외사·방앗간·약국·정육점·독서실·기원·탁구장·당구장
·표구점 및 소규모연쇄점에 한한다)·사회복지시설(탁아소·양로원등을
말한다)·사당 또는 종교시설이나 유치원(새마을유아원을 포함한다)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 (3) 신용보증기금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천왕동 소재 기존 공장시설을 그 부
설교육훈련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 (4) 제7조제1항제3호 고목의 규정에 의한 승마경기장 및 그 부대시설을 경마
장 및 그 부대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라. 개발제한구역안에 그 노선의 시점과 종점을 이미 두고 있는 버스운수업체가
기존정류장안에 설치하는 안내양의 후생복지시설·자가주유소 및 간이정비
시설의 설치

- 마. 사회복지시설(양로원·고아원등)의 운영·관리를 위한 부대시설의 설치
- 바. 청주시내의 기존 연탄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청원군 강내면 정봉리에 설치
하는 연탄공장 및 그 부대시설
- 사. 종교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의 증축(새로운 대지조성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증
축면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의 종교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의 연면적의
범위안으로 한다)

- 아. 공중목욕탕
- 자. 효열비·사당 및 이와 유사한 시설
- 차. 나환자촌에 설치하는 진료소 및 종교시설과 나환자가 건계분을 이용하여 직
접 경영하는 생산시설
- 카.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이 경기도 양주군 주내면 이둔리에 설치하는 청소년 심
신수련장시설 및 그 부대시설
- 타.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사회지구(이하 “사회

지구"라 한다)안에 설치하는 건축물 및 공작물(건축법의 규정에 의한다)

과. 이미 시가화된 지역에서 기존시장의 집단정비를 위하여 기존시장의 규모를
합한 규모내의 시장의 설치

하. 다목(4)의 규정에 의한 경마장의 부대시설의 설치

거. 대도시의 교통난 완화를 위하여 시내버스 노선계획이 조정됨에 따라 지방자
치단체가 설치하여 임대하는 공영차고지와 그 부대시설(숙소 및 교육훈련
시설을 제외한다)

②제1항의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허가신청서는 건축법시행규칙의 해당 서식
에 의하고, 제8조의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를 포함한다)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며, 설계 또는 공사감리는 건축사법에 의한다. <개정 81·2·21,
82·12·3>

③영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 행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82·4·17, 82·12·3, 89·2·3, 90·10·31>

1. 50제곱미터이하의 주택 또는 33제곱미터이하의 부속건축물의 증축·개축·재
축 및 대수선

2. 제7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서 50제곱미터이
하의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다만, 동조동항동호 아목 및 카목의 규정
에 의한 관리용 건축물의 증축을 제외한다.

제8조 (토지형질변경의 범위) 영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77·4·25, 78·2·3, 78·2·18, 78·11·11,
79·12·8, 80·5·29, 81·2·21, 82·4·17, 82·12·3, 82·1·24, 83·7·6, 8
3·9·22, 84·6·30, 85·5·1, 86·10·30, 87·2·28, 87·11·16, 88·3·10,
89·2·3, 90·10·31>

1. 농림·수산업을 위한 개간과 낙농 또는 초식가축의 사육을 위한 초지조성

2. 죽목의 벌채 및 재식. 다만, 산림안에서의 죽목의 재식과 조림을 위한 벌채는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다

3. 토지수용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이를 위한 토석의
채취와, 시화지구개발사업 및 부친중동지구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인접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토석의 채취(부대시설의 설치를 포함한다)

4. 하천구역에서의 토지 및 사력의 채취(하천법의 규정에 의한다)와 수도권 및 부산
권의 개발 제한구역안에서 당해 권역의 내수용에 공할 목적으로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석산개발 또는 산사리 및 육사리의 채취(부대시설의 설치를 포함한다)

- 5.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한 레미콘 및 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의 설치
- 6. 국가경제발전에 기여되는 다음 지하자원의 조사 및 개발

종 별	기 준
석 탄	연간 30,000톤이상의 생산규모로 7년이상 가동할 수 있는 광산
금	연간 50킬로그램이상의 생산규모로 5년이상 가동할 수 있는 광산
중 석	연간 30톤(Wo 70%)이상의 생산규모로 5년이상 가동할 수 있는 광산
동	연간 1,000톤(Cu 6%)이상의 생산규모로 5년이상 가동할 수 있는 광산
철·연·아연	연간 20,000톤(Fe 56%, Pb, Zn 각각 50%)이상의 생산규모로 5년이상 가동할 수 있는 광산
활석·옥석·수정	연간 6,000톤이상의 생산규모이거나, 연간 생산액 1억원이상으로 5년이상 가동할 수 있는 광산
사분암	연간 6천본이상의 생산규모로 5년이상 채굴할 수 있는 광산
은	연간 1,000킬로그램이상의 생산규모로 5년이상 가동할 수 있는 광산
납 석	연간 6,000톤이상의 생산규모로 5년이상 가동할 수 있는 광산

- 7. 녹지조성에 도움이 되는 시설을 위한 형질변경
- 8. 공원묘지의 설치
 - 가. 묘지계획 규모는 9만9천제곱미터이상으로 하되, 묘소면적은 그 면적의 2분의 1 이하
 - 나. 분묘설치기준은 매장묘지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 9.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안에 있는 기존 적연와 공장이 적연와 제조를 위하여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안에서 행하는 점토채취(점토채취 예정지는 채취후 농지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이어야 한다)
- 10. 제7조제1항제3호 타목의 시설의 위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과 그 시설로 인하여 철거되는 기존건축물의 이축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11. 제7조제1항제3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부락공동사업 및 취락구조개선 사업에 따른 대지조성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형질변경

12. 경작중인 전·답의 환토·객토용 토석의 채취 및 전답의 환토·개답·개간
(경사도 5도이하로서 무임목지에 한한다)에 수반되는 골재의 채취와 저수지
및 수원지의 준설에 따른 골재의 채취
 13. 제7조제1항제3호 라목의 학교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형질변
경
 14. 제7조제1항각호(제7조제1항제3호 가목·라목·사목 및 타목을 제외한다)에
서 허용하고 있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형질변
경
 15. 공용청사·학교·공장등 기존시설의 다듬어진 부지안에 설치하는 정구장·
배구장·축구장등의 체육시설(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
한다)
 16. 시화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다)을 위한 토지형
질변경
 17.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분묘를 철거하고 그에 따른
개장을 위하여 공설묘지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설치(분묘의 설치기준은 “매장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18. 기계화영농등 주민소득사업을 위한 임도·진입로등의 설치를 위한 토지형질
변경
 19. 구역지정이전부터 지상에 방치된 광물폐기물의 제거를 위한 토지형질변경
 20. 문화재의 조사발굴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 제9조 (건축물의 최소대지면적등)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안
에서의 건축물의 최소대지면적,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 건축면적의
토지형질변경 면적에 대한 비율 및 토지분할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79·12·8, 82·4·17, 82·12·3, 89·2·3, 90·10·31>
1. 건축물의 최소대지면적은 132제곱미터. 다만, 기존건축물을 개축하거나 재축하는
경우에는 90제곱미터로 한다.
 2.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은 100분의 60, 건축연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은 300퍼센트이내
 3.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은 설치할 건축물 및 공작물 바닥면적의 2배이내 다만, 다른
법령에 건축물 및 공작물과 관련하여 따로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시설